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

부동산 공급계약 인지세 납부 안내



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"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"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. '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' 계약자께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시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안내

과세대상	부동산 공급계약서
납부기한	분양 계약 : 「인지세법,제8조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※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인터넷 구매 : www.e-revenuestamp.or.kr 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방문 구매 : 우체국 및 은행 (현금납부만 가능)
납부 세액	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수입인지 가격 : 150,000원
가산세	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 부과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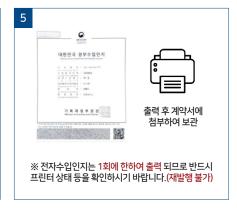
■ 온라인 구매 방법 안내











■ 우체국 및 은행 방문 구매 방법 안내



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(용도 : 인지세납부 / 금액 : 150,000원 / 매수 1 매) 결제 및 전자 수입인지 발급 (현금납부만 가능, 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)